

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

신고번호

관리자(성명 또는 법인명)

대지위치

지번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연면적 합계

해체 건축물 수

m²

주 건축물 (동)
부속 건축물 (동)

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 해체 신고에 대하여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